

# (사)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선거관리규정

제 정 2020.09.08.

개 정 2022.10.1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 이라 한다) 정관 제17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장 선거운영위원회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스포츠클럽은 회장임기 만료일 70일전까지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아래 각호에 따라 4인으로 한다.

1. 스포츠클럽의 이사 중 연장자 2인
2. 스포츠클럽의 대의원 중 연장자 2인
3. 스포츠클럽의 사무국장은 간사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회장후보에 입후보하거나 입후보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차 순위 연장자

③ 선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조 제2항 제3호의 위원 중 연장자가 담당한다.

④ 선거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선거운영위원회의 업무)** 선거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일정의 확정
2.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의 소집 요구  
(회장은 선거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사무
4. 회장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공약 전파
5.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체의 사무
6. 당선자 확인 및 선포
7. 선거인 수의 배정
8.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9.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10.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1.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2. 그 밖에 선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 제1항 1호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정관 제23조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1(선거인 명부의 작성)** ①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5조의 2(선거인 명부의 열람)** ① 선거운영위원회는 제5조의1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 1통을 사무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운영위원회에 선거인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운영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6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정관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클럽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이 후보자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후보자의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선거인 명부 열람을 시작한 날로 한다.) 부터 3일 동안 선거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선거운영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이후 10이내에 등록된 후보자들에게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에 대한 성명, 인적사항, 공약 등의 정보를 선거인단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탁금)

-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3백만원 이상의 기탁금을 선거운영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운영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예금계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9조(등록신청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법원발급)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주민등록초본
  5.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별지3호)
  6. 기탁금 납입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
- ②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③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④ 선거운영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 제5장 선거운동

#### 제10조(선거운동기간) 후보자는 선거운영위원장의 후보자 공시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12조(벌칙)**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후보자에 한한다)
  - 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 다.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9조 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영구 제명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선 취소가 된다.

## 제6장 선거

**제13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 ④ 투표인단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으로 한다.

**제14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선거운영위원회는 정관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6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단아야 한다.

**제17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선거운영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클럽에 귀속하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 클럽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장 당선 결정

**제19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0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21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운영위원장은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클럽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22조(재선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당선 무효 및 당선 취소가 된 경우

**제23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운영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선거운영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그 밖의 사항)** 클럽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 소: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사)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회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1.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확인서(별지2호).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법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1통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3호)

5. 기탁금 납입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이력서(대표약력 표기) 1부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사)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사)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사단법인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서식]

## 범죄사실 부존재 본인 확인 서약서

성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 00대 사단법인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사단법인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사단법인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선운위 제2000-00호

## 회장 당선인 공고

2000년 00월 00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00대 사단법인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2022년 00월 00일

사단법인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선거운영위원회